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3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민홍철・이재정・문대림

이기헌 • 복기왕 • 염태영

양문석 • 김준혁 • 황운하

이건태 · 김영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철 도공단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,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·관리하는 철도시설, 폐선로 •폐역사,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, 현행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

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).

법률 제 호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"국가철도공단"을 "지방자치단체, 국가철도공단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2(점용허가) ① 국토교통	제23조의2(점용허가) ①
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	
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에도	
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	
나 그 밖의 시설물(이하 "시설	
물"이라 한다)의 종류 및 기간	
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	
있다.	
1. <u>국가철도공단</u> (국가철도공단	1. <u>지방자치단체, 국가철도공단</u>
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),	
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	
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	
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	
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	
소유・관리하는 철도시설, 폐	
선로 및 폐역사(부지를 포함	
한다), 유휴지 등 철도 관련	
국유재산(「철도산업발전기본	
법」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	
영자산은 제외한다)에 시설물	
을 설치하려는 경우	
	_

② (생 략) 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 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